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8. 14 선고 2019가단52516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주식회사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틀

담당변호사 김현민

2. D

변론 종결2020. 7. 17.

판결 선고2020. 8. 1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,908,575원 및 그 중 17,606,859원에 대하여 2019. 6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청산종결된 법인이라고 주장하나,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이므로(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99다66427, 73371 판결 참조),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유지현

별지